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박상희* · 한은정** · 이정석***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체계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하고, 일본의 제도가 한국의 제도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의 성격을 노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을 위한 도구로 정의하고 재가급여로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양국의 복지용구 급여 제공 정책을 급여대상자, 급여기준, 복지용구 전문인력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급자 중심의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내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강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 이용의 제한과 급여한도액의 차이 설정,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의 활용,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연구, 복지용구 급여, 케어매니지먼트, 전문인력

- 이 논문은 2016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규연구과제 보고서인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논문으로 재구성한 것임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저자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저자

I. 서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타재가급여의 형태로 복지용구를 급여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다른 재가급여와 다르게,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의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복지용구를 보조할 수 있는 수발자 존재 여부, 수급자의 주거환경, 복지용구 품목 자체에 대한 지식과 사용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안내와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복지용구 급여는 모든 재가급여 수급자들이 연간 160만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고 있다.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품목을 정할 때에도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이 도출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는 수준이므로 수급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체계적인 복지용구 이용 상담이 부족하다. 그 결과 수급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자신에게 필요치 않은 복지용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국제신문, 2008; 청년의사, 2015). 2016년 7월 기준, 등급별 복지용구 이용현황에서도, 1등급을 제외한 2~5등급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 급여품목에 차이가 없어, 복지용구의 이용이 수급자의 필요보다는 선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6).

이를 개선하려면 수급자의 필요에 적합한 복지용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용구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수급자의 관점에서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복지용구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용구의 이용효과, 만족도 등 복지용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거나(박경영·김민선, 2009; 이태범·장현숙, 2010; 박수정·신중일, 2010; 김경래, 2011; 유재성 외, 2011; 김수봉 외, 2013), 복지용구 이용 대상자의 복지용구 사용 경험을 질적연구 방식으로 고찰하거나(강정희, 2014), 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용구 급여제도의 인력, 사업소, 유통과 같은 복지용구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김정순 외, 2009; 진영란 외, 2010; 진영란·이효영, 2010; 진영란 외, 2015; 장현숙 외, 2006; 유재성 외, 2010; 손수

석, 2011; 송순영, 2012; 양영애 외, 2011; 권진희 외, 2015; 문인혁, 2007; 김경래, 2011; 이훈희 외, 2011; 손수석 2011; 김대중 외, 2012; 박미혜, 2015)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하지만 케어 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수급자의 자립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상태(경증·중증 구분)에 적절한 급여제공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케어매니저와 복지용구 전문상담원 같은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시사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차이를 밝혀내고, 일본 제도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라는 용어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노인용 보장구,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구, 보철구, 고령친화용품 등의 유사한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각각에서 정의하는 개념은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김경래, 2011; 김대중, 2013). 가장 일반적인 복지용구의 개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에서 정의하는 복지용구이다. 동법 제23조 1항에 의하면,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재가급여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도 복지용구의 개념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복지용구 급여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현재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구분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2항에 의하면, 복지용구 급여는 2018년 현재 구입품목 10종, 대여품목7종, 구입 또는 대여품목 1종 총 1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구

입품목은 수급자가 구입 가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하고 구입하는 품목으로서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거나 사용 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며, 대여 품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다. 반면 복지용구 대여품목은 수급자가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으로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의 15%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품목이다. 소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수리와 같은 유지·보수가 빈번한 비교적 저렴한 제품이다.

〈표1〉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 복지용구 품목

구입품목	대여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경사로
욕창 예방매트리스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 19조 제2항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선행연구의 검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이래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2,423명이 복지용구를 이용하였으나, 2015년까지 매년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2008년 대비 2015년은 8.7배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6)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 역시 2000년 이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복지 용구의 이용 효과, 만족도, 필요도를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복지용구 사용으로 인

한 긍정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즉, 노인들의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복지용구 사용 후 노인의 일상생활기능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이용 필요도 및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복지용구 이용이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울 뿐 아니라 가족부양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경영·김민선, 2009; 이태범·장현숙, 2010; 김경래, 2011; 김수봉 외, 2013; 김경희, 2017).

둘째, 복지용구 이용자들의 복지용구 사용 경험에 대한 소수의 질적 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복지용구의 사용이 보편적인 서구에서 수행되었는데, 복지용구 이용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복지용구 이용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편견, 불편한 사회환경, 개인적 심리상태, 신체적인 도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복지용구 이용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수반되는 육체적 고통과 같은 부정적 측면, 낙인 효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Aminzadeh and Edwards, 2001; Kronlof and Sonn, 1999; Gitlin, Luborsky, and Schemm, 1988; McMillen and Soderberg, 2002; Skymne, Dahlin-Ivanoff, Claseson and Eklund, 2012). 국내에서는 재가 노인의 복지용구 사용경험에 대한 연구(강정희, 2014)에서 지팡이나 고령자용 보행차를 사용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용구의 사용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복지용구 이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도전과 영향을 밝혀내었다.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인력, 사업소, 유통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복지용구의 운영현황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진영란·이효영, 2010; 유재성 외, 2010; 진영란 외, 2010; 손수석, 2011; 이훈희 외, 2011; 김대중 외, 2012; 진영란·김광병, 2013; 권진희 외, 2015; 양영애 외, 2014; 박미혜, 2015).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가 시작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효과적인 복지용구 급여의 운영현황과 관리방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복지용구의 효과성, 이용자의 이용 경험, 운영과 관리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급자 중심에서 사회보험 급여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 제공에 관한 비교연구는 수급자 측면에서 양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비교 분석틀

비교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국가들의 행정 현상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 개선에 필요한 지식 기반을 정립하는데 있다(Dekker, 김용진·김지희 역, 2000:23). 본 연구는 수급자 중심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위하여 한국의 장기요양보험과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 내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동 제도는 모두 사회보험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의 성격을 노인의 일상생활자립지원을 위한 도구¹⁾로 정의하고 재가급여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 제도는 정부(보험자)가 복지용구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에게 이러한 급여품목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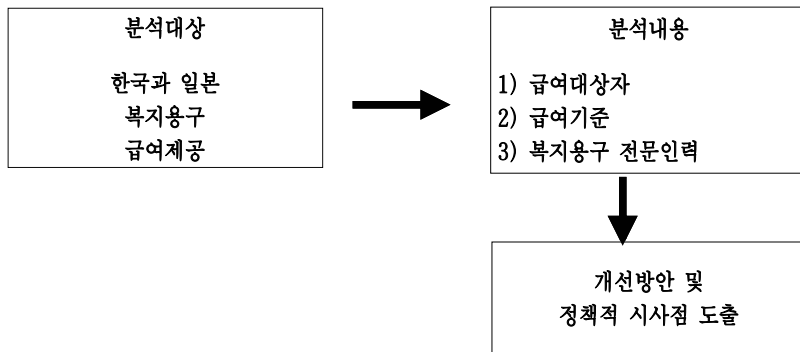
수급자 관점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려면, 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용구 이용지원, 즉, 케어매니지먼트가 원활해야 할 것이다. 케어매니지먼트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존중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찾아 연결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오세영, 2009: 257 재인용). 그러나 현행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가 기능하지 않으므로 복지용구 수급자에 대한 이용지원이 취약하다. 즉, 많은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케어매니지먼트의 부재로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급여 전달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 통제에 어려움이 있다(임정기 외, 2011; 김찬우, 2013: 220).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여, 수급자의 복지 욕구, 수급자와 그 가족의 의견, 서비스 선택 이용을 조정하고 급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오세영, 2009; 정재욱,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핵심영역을 분석기준으로 사용하였다. OECD 국가들의 케어매니지먼트 연구들은 대상자 선정, 급여기준, 케어매니지먼트 담당 기관, 케어매니저의 영향력, 일인당 사례수, 케어매니지먼트 실천의 질 관리 및 표준, 케어매니지먼트 실천 과정상의 논리성과 일치성(WHO, 2003; 김찬우, 2013), 케어매니저 역할의 포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은 복지용구 급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로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는 「개호보험법」 제7조 제17항에서 심신의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요개호자 등의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 요개호자 등의 기능훈련을 위한 용구로 명시한다.

활성,케어매니저의 전문성(유재남, 2008) 등을 분석기준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도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 분석에 필요한 첫째,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 둘째, 복지용구 급여기준, 셋째,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구성 요소로 한 복지용구 급여제공 비교 분석틀을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마련하였다.

〈그림1. 비교분석틀〉



이와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방식을 검토한 후, 일본의 제도가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사용되어진 자료는 일본의 경우 2010년~2016년에 개정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며, 한국은 2016년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각종 간행물, 논문, 번역서적,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문헌 조사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정책 관련 전문가들과의 면담,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자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III. 한·일 복지용구 급여제공 비교

1. 급여대상자

한국의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 즉, 재가대상자에게 지급된다. 현행 급여는 수급자의 중증 및 경증에 구분 없이, 모든 수급자들이 연간 160만원의 한도액 안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진 다른 재가급여의 월한도액과는 분리하여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는 동일한 금액이다. 연한도액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개시된 최초일부터 매년 1인당 연간 160만원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 수급자가 비용을 본인 부담한다. 복지용구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 가격의 15%로, 구입의 경우 복지용구 판매가의 15%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하고, 대여는 복지용구 대여가의 15%를 매월 지불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경감대상자는 7.5% 만 본인부담한다.

반면, 일본 역시 개호보험 재가대상자에게 복지용구를 지급하고 있지만, 경증 수급자에게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개호보험 개호보수를 개정하면서 요지원 1, 2와 요개호 1은 경증 수급자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품목인 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 부속품, 욕창예방용품, 체위변환기,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이동용리프트(이승 부분 제외)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2년도 법 개정에서는, 자동배설처리장치(노만을 자동으로 흡입하는 용구 제외)가 추가되어 보험급여 대상 제외 품목은 현재 9개로 증가되었다. 경증자에게 대여 품목을 제한하는 일본은 대여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범위 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이용하게 하고 있다. 즉, 수급자는 재가급여의 월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같은 다른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복지용구 급여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 10%는 본인부담이고, 한도액 이상은 수급자 본인부담이다. 한편 복지용구 구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연간 10만엔의 상한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구입비의 90%(본인부담금 10%)까지 개호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이다.

2. 급여기준

한국은 복지용구 품목별로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와 그에 따른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수급자들에게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선정해주고 있다. 즉, 이 방식은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부합하는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보다는 사용할 필요없는 복지용구와 사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복지용구 급여범위와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데,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라목 '행동변화영역', 바목 '재활영역', 마목 '간호처치영역'이다.

한편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 급여품목별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급여품목은 품목별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시설급여 이용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입원 기간에도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도 급여가 제한된다²⁾. 그러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4항에 근거하여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 변화 또는 복지용구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복지용구 품목 변경을 위한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체상태 변화, 복지용구 훼손,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는 없으나 수급자나 수발자 모두에게 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급자의 등급별로 복지용구 급여 이용에 제한을 두면서, 예외급여를 도입하였다. 수급자의 개호보험 등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복지용구 선정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정하는데, 이 기준은 복지용구 품목별로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상태'와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대상자'의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데(후생노동성 고시 제93호), 이에 근거하여 케어매니저가 수급자의 케어플랜을 적절하게 작성하도록 지원하며, 지자체가 수급자의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복지용구 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호보험 하에서 복지용구 급여는 개호 등급(요지원, 요개호)별로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다소 차이가 있다. '복지용구 선정의 판단기준'은 2004년 6월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정한 것으로, 중증 수급자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증 수급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복지용구 급여품목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³⁾. 이 기준은 개호보험의 이념이라고 볼

2) 2013년 2월 「법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장애인보조기구 통합DB를 구축하여 4개 부처 8개 사업의 전체 보조기구에 대한 중복 확인이 가능해졌다.

수 있는 수급자의 자립 지원 성취를 강화하고 있다.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은 후생성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지용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일지라도 급여품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증자에는 예외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외급여 상태는 '요개호 인정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최근 인정조사를 받은 결과가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2012년 후생노동성 제95호 고시 제25호)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케어매니저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수급자의 예외급여 필요성을 판단한다.

3. 복지용구 전문인력

한국의 경우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 용구의 사용을 도와주는 복지용구 전문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에 의하여, 복지용구 이용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용구 이용지원은 수급자가 복지용구 급여 이용이 용이하도록 수급자의 정기 상담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급여이용자나 미이용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에 관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복지용구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A/S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용구 급여를 대여·판매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복지용구 인력의 직종이나 교육조건과 같은 별도의 자격기준³⁾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2014년에 신설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복지용구사업소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사)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GPS)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제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으로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3) 2006년 개호보험 개호보수 개정 시, 복지용구 대여에서 요지원 1, 2와 요개호 2는 경증자로 취급하여 경증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품목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품목은 휠체어, 휠체어부속품, 특수침대, 특수침대 부속품, 욕창예방용품, 체위변환기, 치매노인배회감지기, 이동용리프트(이승 부분 제외) 등 8개 품목이며, 2012년 법개정시, 자동배설처리장치(노만을 자동으로 흡입하는 용구 제외)가 추가되어 보험급여 대상 제외 품목은 9개가 되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2항은 복지용구사업소의 관리책임자 1인을 필수로 필요수의 사무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필요수 사무원의 항목이 삭제된 상태이다.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뿐이다.

한편 등급별로 사용 가능한 복지용구 품목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예외 급여를 허용하는 일본은 복지용구 대상자를 판단하는 케어매니저와 같은 전문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케어매니저가 케어플랜을 작성하여 보험자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 케어플랜의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오세영, 2009). 일본은 복지용구 인력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인력을 훈련·양성하고 있다. 복지용구 전문인력으로는 케어매니저를 비롯하여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복지용구 플래너가 있다.

개호보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거택개호지원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케어매니저는 수급자를 상담하고, 케어플랜을 작성한다. 케어매니저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급여제공을 위하여 복지용구전문상담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석하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의 선정은 케어매니저와 복지용구상담원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지용구상담원은 케어매니저가 작성한 케어플랜에 근거하여 복지용구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한다.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용구 급여 상담을 하고, 수급자의 상황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평가하여 케어매니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케어매니저는 서비스 담당자 회의를 통해 복지용구 상담원이 제안한 복지용구를 안전으로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정한다.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0년부터 복지용구전문상담원 두 명을 복지용구사업소에 의무 배치하였고, 이 중 한 명은 후생성이 실시하는 복지용구 강습회를 필수적으로 수료하도록 하였다. 2012년부터는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복지용구전문상담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용구 서비스계획을 개발하여 이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후생성에 요청하였다. 복지용구 서비스계획은 이용자 기본정보, 단기·중기·장기 이용자의 케어플랜과 각 기간별 목표, 복지용구 품목선정과 선정이유, 복지용구 사용 주의사항, 이용자 동의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복지용구전문상담협회는 정기적으로 서비스 계획을 모니터링하도록 복지용구사업소를 권고하고 있다. 3~6개월 중 한 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복지용구를 재검토하여 필요 없는 복지용구를 회수하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 협회에서 민간 복지용구전문가로서 복지용구 플

래너를 양성하고 있다. 복지용구상담원은 복지용구사업소 내 판매·대여하는 복지용구 전문가인 반면, 복지용구 플래너는 복지용구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이다. 테크노에이드 협회에서는 복지용구 플래너와 플래너 관리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호보험은 복지용구 플래너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전국에 약 13,000명의 복지용구 플래너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IV. 비교분석 및 시사점

한국과 일본은 모두 복지용구 급여의 목적을 심신의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일상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능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상생활자립지원 도구로 정의하고, 재가급여 중의 하나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양 제도는 보험자가 복지용구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적절한 품목을 결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수급자의 이용지원을 위해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볼 때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 내에 공식적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취약하므로 급여대상자, 급여기준, 복지용구 전문인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그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2>과 같다.

<표2> 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비교

	한국	일본
급여대상자	- 모든 재가수급자 - 중증/경증 복지용구 급여 차이 없음 - (구매/대여)연 160만원	- 모든 재가수급자 - 경증자에게 복지급여품목 제한 - (대여) 재가서비스 월한도액/ (구매) 연간 10만엔
급여기준	- 신체기능상태 판정기준과 추가급여신청 -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	- 사용이 불필요한 상태/대상자와 예외급여 신청 - 케어매니저의 판단
복지용구 전문인력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과 이용지원인력 - 복지용구사업소 사업자 교육	- 개호보험 케어매니저 -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과 케어플래너

첫째, 급여대상자 선정방식에서 한국과 일본은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복지용구 급여대상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장기요양수급자이며,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연간 160만원의 한도액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중증 및 경증 구분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 수급자가 필요하지 않은 복지용구 품목을 이용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7월 기준, 복지용구 품목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신체 및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을 제외한 2등급~5등급에서 사용하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대여의 경우는 수동휠체어를, 구입의 경우는 미끄럼방지용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6). 이는 수급자들이 필요도 보다는 선호도에 의해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특히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의 케어매니저의 급여 조정 기능이 부재하므로 수급자가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비용통제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김영숙 외, 2006; 유재남, 2009).

일본의 경우, 2006년부터는 경증자(요지원 1, 2와 요개호 1)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제한하지만, 케어매니저가 제한된 복지용구 중 복지용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수급자에게 예외급여의 형태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제공하여, 개호보험의 재정안정과 복지용구 과잉 이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대여 품목의 경우에는 케어매니저가 전체 재가서비스의 월한도액안에서 다른 재가급여와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도록 조정하고 있어,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과잉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수급자 중심의 복지용구 급여 제공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하여 수급자의 경증이나 중증의 신체상태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을 이용하도록 조정하거나, 수급자의 등급별로 급여한도액의 차이를 설정하는 정책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 모두 복지용구 급여제공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용구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와 신체기능상태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현행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위한 판단기준은 수급자의 건강과 신체기능 상태에 적합한 최적의 급여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양영애 외, 2012; 권진희 외, 2015).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2017년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을 개발하였다.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

은 대상자들에게 신체기능, 욕구,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급여 품목을 권고하는 것이다.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간호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수급자의 기능과 건강상태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목록 데이터를 수집한 후 과학적인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도출하였다.

반면 일본은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상태와 사용이 불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개호보험 등급별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케어매니저가 대상자를 판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수급자 중심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상태에 적절한 복지용구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있어서는 케어매니저에 의한 케어매니지먼트 기능이 제도화되어있지 않으므로, 수급자의 신체와 건강상태에 따라 과학적으로 구축된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을 활용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복지용구 급여 이용지원을 위해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의 직원을 활용하는 반면,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은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복지용구의 급여이용은 급여대상자로서 수급자의 특성뿐 아니라 복지용구 품목 자체의 특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통한 안내와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과 잔존기능을 파악해야 하고, 수급자를 케어하는 가족수발자나 요양보호사의 복지용구 활용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한다(Białkowska & Januszko, 1998; 닛타준코, 2009; 양영애 외, 2009; 장문영·정혜영, 2010; 김수봉 외, 2013). 그러므로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 직원들은 복지용구 급여 품목, 수급자의 거주환경,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품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안내하는 급여 품목과 실제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급여 품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 품목을 안내하게 되는 공단 직원들을 교육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용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복지용구 전문가는 수급자의 거주

환경과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복지용구의 사용과 관리방법을 훈련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을 사업소에 2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은 후생노동성이 정한 강습회 50시간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침(개호보험 거택서비스 운영기준 제201조)을 두어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복지용구전문상담원 협회와 재단법인 테크노에이드 협회에서도 복지용구전문상담원의 양성 및 질 관리, 복지용구 전문가 과정인 복지용구 플래너 연수과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 내에 공식적인 케어매니저가 존재하지 않으며,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사용법을 교육하고, 사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본의 복지용구상담원과 같은 복지용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수급자의 상태에 적절한 복지용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용구 사용법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인력이 복지용구사업소의 복지용구 전문상담원임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과 같은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해 한국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복지용구 이용의 효과성과 만족도, 복지용구 이용경험, 복지용구 운영관리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수급자 중심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수급자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분석하기 위해 급여대상자, 급여기준, 전문인력이라는 비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정책을 비교 분석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양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케어매니지먼트를 제도화하고 있는 일본과 그렇지 않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은 세부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본은 경증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제한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예외급여를 제공하도록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수급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복지용구를 선정해주는 케어매니저와 복지용구상담원이 협력하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관련 없이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160만원의 연한도액 내에서 복지용구 급여를 사용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용구 선정 시에도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와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목록을 안내할 뿐이었다.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다르고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 품목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 급여를 선정해줄 수 있는 복지용구 표준급여모형을 활용하는 것과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품목과 한도액의 차이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에 있어서 케어매니저와 복지용구전문상담원과 같은 복지용구 전문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의 경우 복지용구 전문인력의 역할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복지용구사업소에 있는 관리자나 사업소 직원도 복지용구 품목에 관한 지식, 활용방법, 기술이 충분하지 못하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려면 복지용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은 기본적으로 개호보험법 1조 명시된 자립 지원의 강화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가 신체허약으로 개호 대상자가 될지라도 가능한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호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자 한다(정재욱, 2009). 이를 위해 개호보험은 수급자의 거택개호를 강조하고,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해 개호급여 이용과정에 있어서 수급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급여 이용체계로 변화하였다.

반면 한국의 복지용구는 급여제공 정책은 여전히 수급자 중심의 급여제공이라기 보다는 수발자인 가족부담의 경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자들의 안전, 인권에 대한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소홀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는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수급자 중심의 복지용구 급여제공체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욕구와 필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즉, 장기요양체계 내에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용구 급여제공 정책을 한국과 일본만을 비교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OECD 주요국 등 다양한 국가 간의 비교를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사회보험 급여로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는 한국과 일본의 제도적 유사성이 있어 일본의 사례가 한국의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영국,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의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상희 · 한은정 · 이정석, 2016.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방안 연구: 표준급여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16. 『복지용구부 업무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진희 · 이정석 · 나영균 · 문용필, 2015. “복지용구 대여제의 적정 운영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권진희 · 한은정 · 이정석, 2009. “장기요양서비스 급여관리 개선방안: 표준급여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권진희 · 한은정 · 이정석, 2011. “장기요양서비스 표준급여모형 재설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김경래, 2011. 『고령화시대의 복지용구의 필요성과 효용에 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희,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가 파킨슨병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72(4): 87-113.
- 김대중, 2013. “복지용구 급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3: 78-88.
- 김수봉 · 남상권 · 심옥수, 2013. “장기요양노인의 복지용구 이용만족도 비교와 개선방안”. 『재활복지공학학회논문지』 7(2): 125-132.
- 김정순 외, 2009. “복지용구사업소 운영 인력의 역할 및 교육훈련의 과제”. 『직업교육연구』 28(4): 113-131.
- 김정아 외, 2015. 『복지용구 제품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찬우,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보건사회연구』 33(2), 219-242
- 닛타준코, 2009. “치매 고령자에 있어서의 복지용구의 이용준엄과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제언”. 『한국작업치료고령친화산업정책학회지』 1(1).
- 박경영 · 김민선, 2009. “복지용구의 사용 만족도와 필요도에 관한 연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1(1): 31-38.
- 박수정 · 신중일, 2010. “외래환자들의 복지용구 사용현황 및 교육 필요성”. 『고령자 · 치매 작업치료학회지』 4(2): 19-25.
- 손수석, 2011. “독일의 복지용구 유통제도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29(2): 209-230.

- 양영애 외. 2013. 『복지용구 급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오세영. 2009.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케어매니지먼트: 이용자 권리보장의 관점”. 『노인복지연구』 44: 253-278.
- 이훈희·양혜경·정운태. 2011. “복지용구산업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사회혁신학회보』 1: 41-59.
- 유재남. 2008. “OECD국가 노인 장기요양보호에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유형 분석”. 『노인복지연구』 41: 277-300.
- 장문영·정혜영. 2010. “작업치료 중재가 노인의 복지용구급여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4).
- 장현숙 외. 2006. “고령친화 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정재욱. 2009. 한·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구조의 특징에 대한 비교 고찰. 『지역발전연구』 8(2): 267-300.
- 진영란·김광병.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도 비교”. 『한국위기관리논집』 9(6): 201-223.
- 한은정·이정석·김동건·강임욱. 2009.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급여 권고모형 개발”. 『응용통계학회』 22(6): 229-23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고령친화용품·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고령친화 복지용구를 중심으로 접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4. 2004년도 상반기 소비자 상담 동향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국외연구>

- Berry, M. J., and Linoff, G. 1997. Data mining techniques: for marketing, sales, and customer support. John Wiley & Sons, Inc..
- Białkowska, J., and Januszko, L. 1998.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of patients with nervous system damage.” *Neurologia i neurochirurgia polska* 33(6): 1311-1316.
- Bradley, S. M., and Hernandez, C. R. 2011. “Geriatric assistive devices.” *American family physician* 84(4).
- Farazmand A. 『Handbook of Comparative and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Marcel Dekker, 1991. 김웅진·김지희, 『비교사회연구방법론』. 한울아카데미, 2000

- Martin, C. 1998. Assistive Technology: the old people's perspective, In I. Placencia, and E. Ballabio (Ed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uropean citizen, Technology for Inclusive Design and Equality, 113-117. Amsterdam: IOS Press
- McMillen, A. M., and Söderberg, S. 2002. "Disabled persons' experience of dependence on assistive device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9(4): 176-183.
- Pettersson, I., Berndtsson, I., Appelros, P., and Ahlström, G. 2005. "Lifeworld perspectives on assistive devices: Lived experiences of spouses of persons with stroke."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2(4): 159-169.
- 輕度者への福祉用具貸与に係る例外給付の取り扱いについて.(2013). 4
老振發第0330001 号、老老發第0330003 号 2007.3.30
- 介護保険における福祉用具の範囲の考え方 第14回医療保険福祉審議會老人保健福祉部會、
1998.8.24
- 介護保険における福祉用具サービスの利用實態及び有効性に關する調査結果概要」厚生労働省老健局振興課 (調査期間: 2009.12~2010.2)
- 福祉用具の報酬・基準について (案) 」社保審-介護給付費分科會 第114回、2014.11.13
- 福祉用具施策の動向について」厚生労働省老健局振興課 第5回「福祉用具における保険給付の在り方に關する検討會」資料、2010.7.27.

〈홈페이지〉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홈페이지 <http://www.apta.org>

독일 복지용구 홈페이지 <http://www.pflegestuetzpunkteberlin.de>:

<https://www.medicare.gov/coverage/durable-medical-equipment-coverage.html>

<http://www.apta.org/SeatingWheeledMobility/MedicarePolicies/MobilityAssistiveEquipment/>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Welfare Equipment benefit
provision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Sanghee Park · Eunjung Han · Jungsuk Lee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Korea and Japan's policies on providing welfare equipment benefit and to draw up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ystem. Korea and Japan both operate social insurance system of welfare equipment benefit and define the nature of it as a tool for support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derly and provide it as home care benefit.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enefit provision system of both countries, based on the target population, the provision criteria, and the care professional, the policies of providing welfare equip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tail. To improve the benefit provision of Korean welfare equipment, it was required to reinforce the function of the care management, limit welfare equipment items and benefit cost according to the long-term care grade, use of standard benefit model of the welfare equipment, and train equipment experts.

Key words: Long-term care insurance, Welfare Equipment, Comparative Study,
Benefit Provision, Welfare Equipment Specialist,

[논문투고일: 2018.06.30, 심사일: 2018.08.07, 심사완료일: 2018.08.20]